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상 일시적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휴직·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지급제한에서 배제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지급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마련(제29조제1호 단서 규정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고용보험법」. 다만, 「고용보험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제2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(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)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29조(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고용보험법」	1. 「고용보험법」. 다만, 「고용보험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다.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용장려금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제2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489